

행정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시설설치 및 운영 ○ 시설비 : 4,881백만원(중기협중앙회에서 삼성그룹 협찬으로 충당)					
<input type="checkbox"/> 운영실적 ○ 전시장					
구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전시회수	19회	49회	46회	48회	54회
참여업체수	1,380 업체	4,530 업체	4,495 업체	3,283 업체	3,652 업체
관람인수	234 만명	176 만명	177 만명	129 만명	105 만명
○ 판매장					
구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입점업체수	44업체	41업체	49업체	32업체	31업체
판매실적	23억원	49억원	55억원	34억원	19억원
부채상환목적예비비출자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00	2001년 6월 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11일 다. 상정일자 : ○ 제20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2001년 6월 25일)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 : 교통관리실장 차동득) 가. 제안이유 ○ 2001년 예산에 편성된 부채상환목적예비비 2,508억원을 2000년말 현재 시전체 부채의 71.0%를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상환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집행방법 : 자본금으로 출자 -시에서 공사에 지원한 출자금은 납입자본금으로 누적되며, 공사지분은 출자규모에 따라 결정되므로 자본금으로 출자 ※ 예산과목 :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교통기획행정, 이전사업비, 출자금 ○ 지원원칙 -만기도래 되는 고이율 부채 우선상환 · 상대적으로 조건이 불리한 고이율부채 상환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시전체 부채규모 감소를 위한 부채상환목적예비비 목적상 타당하며, 양공사 자금운용면에서도 유리 -잔액은 양공사 2000년 운영개선실적을 반영하여 차등 지원 · 부채대책 및 부채상환목적예비비편성 취지에 따라 양공사 운영 개선실적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 촉진 ○ 출자규모 : 총 2,508억원(지하철공사 1,396억원, 도시철도공사 1,112억원) -현재 관리되고 있는 고이율 부채중 만기가 도래되는 지하철공사의 1,100억원과 도시철도공사의 800억원을 상환토록 배분하고 -잔액 608억원은 2000년도 지하철 양공사 운영개선실적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하철공사 296억원, 도시철도공사 312억원을 추가 배분하여 고이율 신규차입 규모를 축소토록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종식) <input type="checkbox"/> 개요 ○ 동 출자안은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2001. 6. 9 의회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00호로 2001. 6. 11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동 출자안의 제안사유는 2001년도 예산에 편성된 부채상환목적 예비비 2,508억원을 2000년말 현재 서울시 전체부채의 71.0%를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상환자금으로 출자코자 지방재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는 부채상환목적예비비로 편성된					

2,508억원중 지하철공사 1,100억원, 도시철도공사 800억원 등 총 1,900억원은 고이율 부채를 상환하고 이를 자본금으로 출자코자 하는 것이며, 나머지 608억원은 지하철공사 296억원, 도시철도공사 312억원을 추가 배분하여 고이율 신규차입 규모를 축소토록 지원코자 하려는 것임.

□주요 사안별 의견

첫째, 부채상환목적예비비 편성에 대한 의견

-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운용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나 동 부채상환목적예비비는 본래의 예비비목적과는 다른 편법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됨.

따라서, 지난해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감채를 위한 부채상환목적 예산이라면 예비비에 편성할 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편성하거나 감채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둘째, 지원원칙의 불합리성에 대한 의견

- 지하철 양 공사의 고이율 부채를 우선 상환하여 시 전체의 부채 규모를 줄이고 공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원칙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할 것이나 양공사의 장기 악성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상환 도래하는 단기부채만을 상환토록 함으로써 단기차입을 유도하는 격이 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부채상환목적예비비 편성목적에 맞지 않다 할 것이며 장기 고이율 부채순으로 상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이와 같은 원칙대로 매년 부채를 상환토록 하여 출자전환한다면 양 공사에서는 출자를 많이 받기 위하여 단기고리의 악성 부채만을 차입하게 될 것임.

또한 시 전체의 부채규모는 줄일 수는 있다 할 것이나 공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원칙에는 “반”한다고 사료되며 이는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어 개선코자 노력은 많이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보다 더 양 공사의 부채규모, 상환계획, 경영성과 분석 등을 토대로 장

기적인 부채상환 및 출자규모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출자하는 것이 책임경영으로 인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추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2002년 예산편성과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항구적으로는 감채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 11명, 재석 11명, 전원일치)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01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02
----------	-----

2001년 6월 일
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12일

다. 상정일자 :

- 제20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2001년 6월 25일)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 : 교통관리실장 차동득)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시내버스업체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업체의 자율적인 인수·합병이나 면허취소되는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고지중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로 결정되어 있는 차고지를 우리시가 매입하여 부채 및 채불임금을 청산토록 지원하고, ○매입차고지는 인수업체 또는 기존업체의 차고지로 사용허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3. 관리계획 변경계획 계상재산 : 취득3건 추가
(토지 2건, 건물 1건) - 목록별첨
- 토 지 : 3필지 8,357.8㎡(2,532.66평)
- 건 물 : 557.0㎡(168.78평)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요약

구 분			건수	면적(㎡)	금 액(천원)	세부사항	
당 초	취 득	매 입	계	7	17,766 (2,172.82)	9,215,802	건물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위에 있는 건물임
			토 지	4	17,766	8,965,864	
			건 물	3	2,172.82	249,938	
변 경	취 득	매 입	계	10	26,123.8 (2,729.82)	22,040,508	
			토 지	6	26,123.8	21,696,299	
			건 물	4	2,729.82	344,209	
추 가	취 득	매 입	계	3	8,357.8 (557.0)	12,824,706	
			토 지	2	8,357.8	12,730,435	
			건 물	1	(557.0)	94,271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특별회계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천원)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면적(㎡)						
계			26,123.8 (2,729.82)	22,040,508					
1	대지	광명시 소하동1054-5	3,044	757,476	2001 년도	공영차고 지보조차 고지	범일운수 정태영 한옥천		
	건물	외6필지	(198.1)	-					
2	대지	송파구 장지동 92-4	8,746	2,766,516			-	지영근 김정숙	
	건물	외8필지	-	-					
3	대지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2,687	1,989,709			(973.69)	태화상운	
	건물	1062-18 외3필지	-	93,318					
4	대지	금천구 가산동29-6외	3,289	3,452,163			(1,001.03)	홍기운수	
	건물	2필지	-	156,620					
5	대지	강서구 화곡동 890	3,209.8	8,955,342			(557.0)	화곡교통 (주)	추가
	건물	외1필지	-	94,271					
6	대지	구리시 토평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5,148	3,775,093			-	한국토지 공사	추가
	건물	38-1B/L외1	-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종식)

□개 요

- 동 시유재산변경계획안은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2001.6.9 의회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02호로 2001.6.12 우리 위원회에 회부
- 동 변경계획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토지 3필지 8,357.8㎡(2,532.66평) 과 건물 557.0㎡(168.78평) 등 총 3건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는 시내버스업체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업체의 자율적인 인수·합병이나 면허취소되는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고지중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되어 있는 차고지를 우리시가 매입하여 부채 및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지원하고, 매입차고지는 인수업체 또는 기존업체의 차고지로 임대코자 하는 것임.

□주요 사안별 의견

첫째, 동 계획안의 제출시기와 소요예산에 대한 의견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난 2월 제124회 임시회의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법령에 따라 계획안이 수립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동 계획안이 제출되어야 하나 또 다시 변경계획안이 제출된 것은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 사료되며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취득코자 하는 재산의 소요예산은 128억 2천 4백만원이 예상되나 과연 어떠한 예산으로 매입할 것인지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는 추경시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둘째, 시내버스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

- 승용차의 급속한 증가와 제2기 지하철의 완전개통 등 버스이용 승객의 절대수요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버스업체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따라서 서비스 또한 버스 승객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버스 수요가 다시 감소하는 악순환의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경영 부실로 인한 서비스 불량업체는 과감하게 퇴출시켜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하철과의 연계노선 등 시민편의 위주의 노선개편의 기반을 조성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중교통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동 계획안은 시내버스 구조조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매우 고무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동 계획안보다 더 절박하고 어려운 업체는 없는 것인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안이 수립되었는지 이에 대한 형평성의 논란이 예상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게 돌아가 불평불만 등 원성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 11명, 재석 11명, 전원일치)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채상환목적예비비출자

2001년 예산에 편성한 부채상환목적예비비 2,508억원을 '00말 현재 서울시 전체부채의 71.0%를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상환자금으로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